

<b>보 도 자 료</b>		
<b>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b> <b>NO MORE DEATH</b>	2020년 9월9일(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조직팀장 재현(010-3782-1871) 진보당 조직국장 김태복 (010-9618-5676)
이메일 <a href="mailto:nomoredeathact2020@gmail.com">nomoredeathact2020@gmail.com</a>   전화번호 02-2670-913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공동 기자회견**  
**- 노동자 · 시민의 힘으로 10만 국민동의청원 완료하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하자**  
**- 노동자 · 시민의 투쟁으로 전태일 3법 쟁취하자**

- 일시 : 2020년 9월 9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 주최 :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기자회견 프로그램

- 사회 : 이종문 공동집행위원장
- 추모 묵념
- 발언 1 현린 | 노동당 대표
- 발언 2 성미선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 3 김태연 |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 발언 4 김재연 | 진보당 상임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보도자료 순서

차례	
□ 기자회견문 .....	2
□ 첨부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현황 .....	3
□ 첨부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이후 일정 .....	4
□ 첨부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용 .....	6
□ 첨부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현황 .....	9

# 기자회견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노동자 시민 죽음의 행진을 멈추자! - 국회는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라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하루 7명 노동자가 출근해서 퇴근하지 못하는 것이다. 세월호, 가슴기 살균제와 같이 시민 재난 참사 역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피해자들과 진보정당, 노동시민사회는 산재 사망과 재난 참사를 일으킨 기업과 정부의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이윤보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금껏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산재 사망과 재난 참사가 반복 할 때마다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하고, 경찰은 언론을 향해 제대로 조사하겠다고 말하고, 정부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입법을 약속했지만, 참사의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재발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어느 것 하나 바뀐 것이 없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과 재난 참사는 명백한 기업과 정부의 범죄다. 그러나 범죄의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 받지 않는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짓밟아도 벌금 400만원에 솜방망이 처벌뿐이다. 위험의 외주화의 주범인 30대 재벌 대기업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95%가 하청 노동자라서, 말단 관리자만 처벌 받고 원청 재벌 대기업 중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 기업이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방치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발생 건수가 2007년에 비해 3배가 증가했고, 범죄 재범률은 무려 97%에 달한다.

이제 더는 넘어진 곳에 또 다시 넘어질 수 없다. 날마다 명복만을 빌 수도 없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고 산재·재난 참사의 주범인 기업과 정부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기업과 정부가 산재·재난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법을 준수하가 안전보건 시스템을 마련하고, 안전보건에 투자를 하도록 강제하는 법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모인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피해자들과 함께 9월 한 달간 10만 국민동의청원운동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노동자 시민의 손으로 직접 발의하고자 한다. 오늘 현재 5만6천명의 노동자 시민의 응답했다. 앞으로 남은 9월 25일까지 10만 노동자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은 온 힘을 다할 것이다. 10만 국민동의청원 이후에는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말로만 그치게 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피해자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0년 9월 9일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첨부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현황

○ 동의청원 청원자 수 현황 (2020년 9월 9일 09:45분 현재 총 56,621명)

☞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



○ 동의청원 사이트 주소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CDEA05947555059E054A0369F40E84E>

(줄임주소 [bit.ly/0925중대재해기업처벌법](https://bit.ly/0925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첨부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이후 일정



[구석구석 알리고 구경말고 청원하는 오늘은 구구데이!]

3분이면, 하루 7명의 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퇴근할 수 있습니다.  
시민재난참사 반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내가 청원할 땐, 아래 주소 꾸~욱!

[http://bit.ly/중대재해기업처벌법\\_국민동의청원하기](http://bit.ly/중대재해기업처벌법_국민동의청원하기)

🏠 가족, 친구, 동료에게 소개할 땐

QR코드(위 사진) 스캔으로

🗣️ 청원이 잘 안된다구요?

① 카드뉴스보고 따라하기


<http://nomoredeath.kctu.org/board/pds/16>

② 동영상보고 따라하기

[http://bit.ly/중대재해기업처벌법\\_국민동의청원\\_안내동영상](http://bit.ly/중대재해기업처벌법_국민동의청원_안내동영상)

📌 6만 찍고, 7만 향해 Go, Go!

#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제정 집중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간담회

- 일시 : 2020년 9월 10일(목) 16시
- 장소 : 법률사무소 소통 강당  
          '노을빛세상' (하단역 4번출구)

\*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님과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님도 함께 하십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선전전

- 일시 : 2020년 9월 10일(목) 17시 30분
- 장소 : 하단역 일대

\* 선전물, 현수막 등이 준비됩니다.  
각 단체별 피켓이 있으면 가져와 주세요

\* 방역을 위해 체온계, 장갑 등 준비하고, 선전전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거리두기 합니다. 참가자들 모두 마스크 착용해주세요!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영역별 릴레이 기자회견 일정 안내]

- 9월 11일(금) 비정규노동자 기자회견, 오전 서울
- 9월 21일(월) 법률단위, 활동가 기자회견, 오전, 광화문 세월호 광장
- 종교단위 온라인 선언 발표 예정
- 청년학생 단위 기자회견 예정

## 첨부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내용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자체법안 내용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결과를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다.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
  -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장
  - 라. 그 밖에 공중을 상대로 교육·강연·공연 등이 행하여지는 장소
3. “공중교통수단”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라.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의 선박
  -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항의 항공기
4.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나. 임대, 용역,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6.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발주”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발주자”가 하는 발주
  - 나. 조선사업의 경우,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선박”(고정식 해양플랜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건조, 개조, 정비, 변경 등에 관하여, 가목의 “건설공사 발주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있는 자가 하는 발주

8. “경영책임자 등” 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

**제3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①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위험방지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제51조, 제58조제1항, 제59조 제1항, 제60조, 제63조, 제64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65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2항, 제8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③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제4조(도급 및 위탁관계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의 귀속)**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공동으로 제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②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설비 등이 위탁되어 수탁자가 그 운영·관리를 지게 된 경우에는 수탁자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공동으로 제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5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제1항의 행위로 사망을 제외한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2명 이상에 대하여 사망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長期) 또는 다액(多額)을 합산하여 가중한다.

**제6조(법인의 처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 및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이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

2. 법인이 소유·운영·관리 또는 발주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그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사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때

3.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사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때

② 법인을 제1항에 따라 처벌할 때 법인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1.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2. 법인 내부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1. 영업허가의 취소
  2. 5년 이내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3. 5년 이하의 이행관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입찰자격 제한
- ④ 법원이 제3항 제3호의 이행관찰을 병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제3항 제1, 2, 4호 중 어느 하나의 제재를 가할 것을 판결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 회복
  2. 관련 종사자의 정기적인 교육
  3.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개선조치
  4. 공익적 급부제공
  5. 공무원의 정기적인 시설점검 및 현장감독
  6. 개선사항의 공개

**제7조(인과관계의 추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에서 정한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 당해 사고 이전 5년간 사업주,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가 정하고 있는 의무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 또는 관련 행정청에 의해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2.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당해 사고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현장을 훼손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 진상조사, 수사 등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방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8조(공무원의 처벌)** 공무원(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권한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의 감독
2.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관련된 감독·인허가

**제9조(양형절차에 관한 특례)** ①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의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증거가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1조에도 불구하고 판결로써 유죄를 선고한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양형심리를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전문가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하거나 피해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전문가위원회의 구성은 「형사소송법」의 양형절차에 관한 특례에 따른다. 다만 국민양형위원회에 당해 사건의 피해자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④ 재판장은 형의 선고 시 제2항에 따라 확인된 심사결과, 피해자 등의 의견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전문가위원회 심사 결과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소송기록에 편철한다.

**제10조(허가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1조(처벌사실 등의 공표)**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처벌의 결과 및 제10조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수준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가해자의 재산상태
7. 가해자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일어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사업주, 법인, 기관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부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현황

###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참여 단체 (9월9일 현재 249개 단체)

#### ○ 공동대표

-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
-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
- 민주노총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도형 대표
- 민중공동행동 박석운 대표
- 생명안전시민넷 송경용 대표
-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 허영주 대표

#### ○ 공동집행위원장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민중공동행동 이종문 집행위원장
-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

#### ○ 지역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대전운동본부 오임술 집행위원장
- 세종충남운동본부 이정호 집행위원장
- 충북운동본부 김순자 집행위원장
- 대전운동본부 박정철 집행위원장
- 울산운동본부 이재현 . 이창규 공동집행위원장
- 부산운동본부 여승철 . 남영란 공동집행위원장

#### ○ 상황실장

-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 참여단체 (가나다순) 총 248개 단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 416연대 / 건강과생명을 지키는사람들(경남, 구미, 전남, 전북, 충남, 평택)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건강한노동세상 / 걷는교회 / 공공교통네트워크 /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 광주참교육학부모회 / 기업과인권네트워크 / 기업과인권네트워크(공익인권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좋은기업센터) / 김용

군재단 / 나눔의집협의회 / 노동건강연대 / 노동당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녹색당 / 녹색당 경기도당 / 녹색연합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다산인권센터 / 두레생협연합회 / 라이더유니온 /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 민생경제연구소 / 민주노총 / 민주노총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중공동행동 반올림 / 변혁당 / 변혁당 학생위원회 / 보건의료단체연합 / 보건의료학생매듭 / 불교인권위원회 /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 비정규직없는서울대 만들기공동행동 /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 사회공공연구원 / 사회적과업연대기금 / 사회진보연대 / 산업재해피해자가족네트워크 다시는 / 삼성전자서비스해복투/ 생명안전시민넷 / 숙명여대노동자와함께하는만년설 /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시민대책위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안산노동안전센터 / 안전사회시민연대 / 여성환경연대 / 예수회 인권연대 / 원불교인권위원회 /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사람연대 / 인권연대연구센터 / 인권운동공간 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인천사람연대 / 인천산재노동자협의회 일과건강 /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과의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전두환심판국민행동 / 정의당 / 정의연대 / 진보당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 참여연대/ 참의료실천청년한의사회 / 천주교남장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유니온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 총 95개 단체

○ 대전 운동본부

녹색당 대전광역시당(준) / 대전변혁실천단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전이주노동자연대 /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 대전청년회 /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 대전충남인권연대 / 대화동 빈들교회 정의평화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 변혁당 대전광역시당(준) / 세상을 바꾸는 대전 민중의 힘 / 양심과 인권나무 /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총 15개 단체

○ 세종충남 운동본부

녹색당충남도당 /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당진환경운동연합 / 동학농민혁명아산시기념사업회 /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 민중당충남도당 / 변혁당충남도당 /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 서산풀뿌리시민연대 / 아산 YMCA / 아산농민회 / 아산시민연대 /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 아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아산이주노동자센터 / 아산책읽는시민모임 / 예산참여자치연대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 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 / 정의당충남도당 / 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 천안KYC / 천안YMCA / 천안녹색소비자연대 /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천안지부 / 청양시민연대 /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 충남노동권익센터 /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플 /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흥

## 성YMCA 총 41개 단체

### ○ 충북 운동본부

노동당 충북도당 / 농민회 충북도연맹 /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 /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 음성노동인권센터 / 음성민중연대 / 정의당 충북도당 / 제천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 진보당 충북도당 / 청주노동인권센터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 호죽노동인권법률센터 총 13개 단체

### ○ 전남 운동본부

(사)여수시민협 / 강진진보연대 / 광양YMCA / 광양YWCA / 광양민속연구보존회 / 광양진보연대 / 광양참여연대 / 광주전남추모연대 / 나주사랑시민회 / 나주진보연대 / 노동당 전남도당 / 목포YMCA / 목포YWCA / 무안진보연대 / 변혁당 광주전남도당(준) / 순천YMCA / 순천YWCA / 순천평화나비 / 여수YMCA / 여수YWCA /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 / 여수진보연대 / 장흥항꾸네 / 전국회의전남지부 / 전남노동권익센터 / 전남참교육학부모회 / 전남농광전연맹 / 전여농광전연합 / 정의당 전남도당 / 진보당 전남도당 /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 해남YMCA / 화순YMCA / 화순진보연대 / 희망해남21 총 35개 단체

### ○ 울산 운동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 노동당 울산시당 / 동구주민회 / 민족문제연구소울산지부 / 민주노총 울산노동법률원 / 변혁당 울산분회(준) /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북구주민회 /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 울산산채추방운동연합 / 울산시민연대 / 울산여성회 / 울산이주민센터 / 울산인권운동연대 / 울산장애인부모회 / 울산진보연대 / 울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정의당 울산시당 / 진보당 울산시당 / 평등사회교육원 울산지부 / 품&페다고지 / 현대중공업노동재해추방을위한모임 총 23개 단체

### ○ 부산 운동본부

가톨릭노동상담소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경지부 / 노동당 부산시당 / 노동사회과학연구소부산지회 / 노동인권연대 / 노동자겨레하나 / 대안문화연대 / 미래당부산시당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 부산경남울산 열사정신계승사업회 / 부산공공성연대 / 부산녹색당 / 부산민중연대 / 부산에너지정의행동 / 부산여성단체연합 / 부산여성회 / 부산참여연대 / 부산환경운동연합 /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 이주민과함께 / 정의당부산시당 / 진보당부산시당 / 천주교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평화통일센터 하나 총 26개 단체

우리가 직접 만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청원자 중  
한 명이 되어주세요

#NoMoreDeath

[bit.ly/0925중대재해기업처벌법](https://bit.ly/0925중대재해기업처벌법)  
9월 25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NO MORE DEATH**